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아량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870
----------	-----

발의년월일 : 2019년 8월 7일

발 의 자 : 송아량 의원 (1명)

찬 성 자 : 송정빈, 김태호, 이동현,
이승미, 이은주, 오한아,
이상훈, 이병도, 추승우 의원
(9명)

1. 제안이유

고용형태의 다양화로 학습지 교사, 레미콘 운전기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기사 등 특수한 고용형태로 일하는 종사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

이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실제로는 타인의 사업에 편입되어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하고 있어 일반 근로자와 다를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근로조건도 매우 열악한 상황임.

공정거래법상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대상이 확대되고 있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환경 증진에 대해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시행 가능한 사항을 발굴,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노동자의 정의에 이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노동자의 정의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와 함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포함되도록 규정함(안 제2조제1호).
- 나.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사항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 환경 개선과 권익 증진 방안을 추가함(안 제6조제2항제5호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근로기준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나. 계약의 형식과 관계 없이 자신이 아닌 다른 자의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

제6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 및 권익 증진 방안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p> <p>2. (생략)</p> <p>제6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생략)</p> <p>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신설></p> <p>5. (생략)</p> <p>③·④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p>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p> <p>나. 계약의 형식과 관계 없이 자신이 아닌 다른 자의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p> <p>2. (현행과 같음)</p> <p>제6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u>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 및 권익 증진 방안</u></p> <p>6. (현행 제5호와 같음)</p> <p>③·④ (현행과 같음)</p>